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 규정 ①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 - 38호

전기사업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 3. 25.

산업자원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수립·사업선정·지원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전담기관”이라 함은 영 제25조에 규정한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기반조성사업의 기획·선정·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주관기관”이라 함은 영 제25조에 규정한

법인·기관 및 단체중에서 장관의 지정 또는 공모에 의하여 제4조에 규정한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 “기금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52조제2항 및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관리 업무를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전력산업기술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이라 한다)”라 함은 기반조성사업의 성과보급 및 기술정보화 관련업무를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반조성사업의 구분) ① 법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기반조성사업을 말한다.

1.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사업
가. 최대전력 수요억제를 위한 축냉기기, 직



- 접부하제어 등 부하관리 기기설치 등을 지원하는 전력부하관리사업
- 나. 고효율 전기이용기기의 사용을 촉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및 자원의 절감을 도모하는 전력효율향상 사업
- 다. 전력수요관리사업에 대한 홍보사업 및 수요관리 성과측정 등을 위한 평가사업
- 라. 최대전력 수요억제, 자율절전 등 부하관리요금제에 참여하는 수용가를 지원하는 부하관리요금지원사업

2.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 가. 전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원천기술 및 미래·대형·복합기술을 중·장기적으로 개발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수급 능력의 확보와 수출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신전원기술개발사업
- 나. 전력계통연계, 송배전, 전력옹용, 전기저장, 전기절약, 전력신소재, 시스템제어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전력계통의 신뢰도 향상과 전력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력계통·이용기술개발
- 다. 국민생활의 편익에 직결되는 전력기초기술 및 전기환경친화·품질·안전·설비시공 등 공익성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전력기초·환경·품질기술개발
- 라. 전력산업체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반기술·범용기술과 전력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공통기반기술개발

3. 전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

- 가. 전력기술 정보화, 기술기준개발, 전력산업분야의 정책연구, 국제협력 및 최첨단 연구시험설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전력기술기반조성사업
- 나. 전력산업분야의 고급인력, 산업인력, 전문인력 및 기초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전력산업인력양성사업
- 다.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기반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홍보사업

4. 전기의 보편적 공급 등을 위한 전력공급사업
- 가. 전원개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 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다.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지원 사업
- 라. 전기안전을 위한 전기시설안전관리, 홍보, 법정점검 등을 지원하는 전기안전관리 지원사업

5. 전력산업과 관련된 타에너지지원사업

- 가. 국내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
- 나. 액화천연가스(LNG)산업 지원을 위한 액화천연가스발전지원사업
- 다.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 라.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를 지원하는 대체에너지발전 지원사업

6. 기반조성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수요조사, 성과분석 및 지원체계구축 등 기반조성기획평가사업

7. 기타 장관이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장관은 사업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업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기반조성사업의 참여대상) 제4조에 규정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에 의한 전기사업자
2. 법 제35조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3. 법 제74조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
4.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5.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6.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7. 영 제25조 규정에 의한 기획관리평가전담 기관

8.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2 장 기반조성사업의 운영체계

제6조(전력정책심의회)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하 “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총괄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은 산업자원부 및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하 “산·학·연”이라 한다)의 전문가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총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산업자원부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반조성계획 수립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기반조성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반조성사업평가단) ① 기반조성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기반조성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 위원은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기반조성사업의 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

되 전담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위촉한다.

단, 제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단 구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③ 평가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반조성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에서 규정한 평가단에서 제4조제1항에 규정한 기반조성사업 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산업자원부 담당관 및 평가단 위원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단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기반조성사업의 원활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반조성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반조성사업내용의 중요사항 변경
3. 기반조성사업의 성과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및 신규지원 대상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전담기관의 소관부서 관리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기반조성사업계획서 및 중간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록 작성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견서에는 세부항목별 적정성 여부 및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사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2. 기반조성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 기반조성사업의 협약체결 대행 및 기술료 징수
4. 기반조성사업비의 지원·정산 및 환수
5. 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및 발굴
6. 기반조성사업의 수행결과 평가 및 활용촉진
7. 기타 기반조성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주관기관) ①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은 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의 수행 등 주관 사업의 종합 관리
2. 사업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해당사업에 한함)
3.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4. 사업성과의 활용 및 결과의 보고

5. 기타 기반조성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기관은 기반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반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14조(정보센터) ①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는 전담기관내에 둔다.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결과물의 배포 및 DB 구축운영
2. 전력산업기술정보의 수집, 분석, DB 구축 및 제공
3. 기술이전 및 사업화
4. 기타 전력산업의 기술정보화 관련사항

제 3 장 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5조(기반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영 제27조에 규정한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 규정한 기반조성계획을 제7조에 규정한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별도의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연도별 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조성계획에 따라 다음연도에 추진할 기반조성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지침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전년도 3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작성지침을 접수한 후 5일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그 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사업으로서 주관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장관은 제1항에 규정한 지침의 작성을 위

하여 기반조성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사업시행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전년도 4월20일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포함한 소관분야의 기반조성사업계획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과 이 규정에 따라 검토·조정한 후 사업계획을 전년도 5월6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다음연도 기반조성사업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5월31일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장관은 제6항에 의한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전년도 5월31일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기반조성사업시행계획의 공고) ① 장관은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부문별로 구분하여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 규모,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시행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일간지, 전문지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반조성사업의 신청 및 선정 등

제18조(사업의 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17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이 지정된 사업 또는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로 신청에 갈음한다.

제19조(신청서 등의 작성요령)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선정 및 평가기준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사업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신청사업의 검토·심의 및 조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단을 활용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한 검토·심의 및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2. 사업 수행능력(사업자의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등)
3. 공동사업의 경우 역할 분담의 적정성
4. 사업성과의 활용성 및 과급효과
5. 사업성과의 배분, 기술이전시기 및 활용 분야등
6. 사업비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 및 경제성
7. 다른 사업과의 중복여부
8.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지정된 사업 또는 계속사업인 경우 다음연도의 사업수행계획서에 대한 심의시 당해연도 사업 평가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신청자격 및 신청서식 등에 위배되는 사업신청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심의 및 조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이를 반영한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의 검토·심의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음로에 계속됩니다